

2008. 3. 5(수) 10:00



145회 거창군의회(임시회)
제 2 차 본 회 의

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

심 사 보 고 서

총 무 위 원 회

【 목 차 】

1.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
2. 거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
3.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
4.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
5. 필리핀 카르모나시와의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13

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 : 2008. 02. 05
- 제출자 : 거창군수
- 상정 및 의결일자 : 2008. 03. 04(제1차 총무위원회)
- 의안번호 : 제2008 - 4호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개정이유

- 행정자치부 예규 제201호(2005. 12. 30)에 따라 기금 운용관을 변경하여 거창군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도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의 순화 및 띄어쓰기를 함
 - 규정에 의거(의한) ⇒ 에 따라(따른) (안 제1조, 제7조제1호)
 - 각호 ⇒ 각 호, 각호의 1 ⇒ 각 호의 어느 하나(제2조 본문, 제3조 본문, 제4조제3항, 제7조 본문, 제6조 본문)
 - 때 ⇒ 경우(안 제6조제1호 · 제2호)
 - 기타 ⇒ 그 밖에(안 제7조제3호)
 - 매 회계연도마다 ⇒ 회계연도마다, 3월 ⇒ 3개월(안 제13조)
 - 범위 내에서 ⇒ 범위에서(안 제14조)

- 기금운용관을 변경 함(안 제12조)
 - 부군수 ⇒ 종합민원실장
-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인용 조문을 수정함(안 제12조)
 - 「지방재정법」 제115조 ⇒ 「지방재정법」 제94조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동 개정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의 순화와 띄어쓰기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위법령에 맞게 기금운용관을 부군수에서 종합민원실장으로 변경하고,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인한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.
- 조례의 개정 시기를 살펴보면 2005. 12. 30일자로 발령된 행정자치부예규 제201호인 「2006년도 기금운용 및 성과 분석 지침」에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을 두도록 하였으며, 기금운용관은 기금별 담당실과장으로 회계관직을 지정하도록 규정하였고,
- 2005. 8. 4일 법률 7663호에 의거 「지방재정법」 제115조가 「지방재정법」 제94조로 전부개정되어 조문이 변경되는 등 상위법령 개정 시기에 비해 현행 조례 개정 시기가 상당히 늦었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추어 적기에 조례를 개정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5. 토론요지 : 없음
6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8. 소수의견의 요지 : 해당없음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

거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 : 2008. 02. 21.
- 제출자 : 거창군수
- 상정 및 의결일자 : 2008. 03. 04(제1차 총무위원회)
- 의안번호 : 제2008 - 7호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개정이유

- 현행 조례의 일부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고 비민주적이고 규제적인 의결방식을 개선하기 위함.

나. 주요내용

- 연임규정을 수정함(안 제5조)
 - 2회에 한하여 연임 ⇒ 1회에 한하여 연임
- 의결방식을 민주적으로 개선함(안 제7조제3항)
 -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하며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 ⇒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조항을 정비함(안 제1조, 제2조제3항, 제4조 본문, 제2조제3항제3호, 제4조제3호, 제6조, 제7조제4항)
 - 규정에 의한 ⇒ 에 따른

- 각호 ⇒ 각 호
- 기타 ⇒ 그 밖에
- 각호의 1 ⇒ 각 호의 어느 하나
- 때 ⇒ 경우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동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일부 미흡한 부분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의 순화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안건으로서
- 금번 조례안 제5조에서 위촉위원의 임기 규정을 2회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 1회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개정하는 사항은
 - 2005. 3월 집행부에서 당초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계속 연임하는 것을 방지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평가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조례 개정안을 제11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하고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을 2005. 4. 20일 공포 시행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음.
 - 그런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평가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자는 조례의 규정에서 군수가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시 위촉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의 위촉 여부

에 대하여는 조례 운영상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번에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2회 연임을 1회 연임으로 개정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,

○ 또한 이번 조례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현행 조례 제2조(구성)제3항 각호에서 평가위원회 위원의 위촉은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

- 조례의 상위 법령인 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1조(시·군·구 부동산평가위원회)제2항의 규정에서 “시·군·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·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, 위원은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” 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 평가위원으로 추천한 자 중에서도 군수가 위촉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,

- 현행 조례의 규정에서 법령에서 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도 평가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조례에서 규정하여야 함에도 규정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,

- 또한 법령에서 당해 시·군·구의 조례에 규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“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”도 평가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조례의 개정안에 포함하여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수정안 요지 :

가. 발의자 : 총무위원회

나. 수정내용 : 별첨

- “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”를

⇒ “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회에 정통한 자 또는 시민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)에서 추천한 자”로 수정

7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해당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

거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조례안	수정안	수정의견
<p>제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위원중 종합민원실장, 재무·도시건축과장은 당연직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.</p> <p>1.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<u>지역사정에 정통한자</u></p> <p>2. (생략)</p> <p>3. <u>기타</u>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</p>	<p>제2조(구성) ① 거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 -----</p> <p>-----</p> <p>② (조례와 같음)</p> <p>③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지역사정에 정통한자 또는 시민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)에서 추천한 자.</p> <p>2. (조례와 같음)</p> <p>3. <u>그 밖에</u>-----</p> <p>-----</p>	<p>○ 상위법에서 “시민단체 (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)에서 추천한 자”도 평가위원으로 군수가 위촉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규정하고 있어 수정함이 타당함</p>
<p>수정의견 사유 : 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1조제2항의 규정</p>		

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 : 2008. 02. 05
- 제출자 : 거창군수
- 상정 및 의결일자 : 2008. 03. 04(제1차 총무위원회)
- 의안번호 : 제2008 - 5호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개정이유

-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의 개정(2007. 12. 13. 공포)사항을 반영하고, 「호적법」이 폐지되고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이 시행됨에 따른 불부합한 문구를 수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근거조항 수정(안 제1조)
 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0조
⇒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3조
- 본청 여유기구를 실과에 포함(안 제3조, 제4조)
 - 여유기구(전략사업추진단) ⇒ 실과에 포함
- 읍면 직무의 기초사무 수정(안 제24조)
 - 호적 ⇒ 가족관계등록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동 개정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이 2007. 12. 13일자로 전부 개정되어 종전에 지역의 특색있는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구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본청에 설치하도록 한 여유기구를 폐지하고,
- 여유기구로 설치되었던 전략사업추진단을 개정된 상위법령에 의거 실·과의 수에 포함하여 개정하는 것이며, 그 밖에 상위법령에 맞추어 인용조문과 주요용어를 수정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해당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

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 : 2008. 02. 05
- 제출자 : 거창군수
- 상정 및 의결일자 : 2008. 03. 04(제1차 총무위원회)
- 의안번호 : 제2008 - 6호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개정이유

- 「공무원여비규정」이 개정(2007. 11. 13.)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하여 현행 조례의 인용 조문변경 및 일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군수의 여비 지급 구분 변경(안 제4조제1항)
 - 「공무원여비규정」 별표 1 제2호 ⇒ 별표 1제1호라목 적용
- 「공무원여비규정」의 준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인용 조문 앞에 “영”을 첨가함(안 제5조)
- 인용하는 상위 규정의 조 및 별표를 변경(안 제5조제1호, 제6조)
 - 제17조 · 제22조 · 제26조 · 제28조 및 제29조
 - ⇒ 영 제17조 · 제22조 · 제26조 및 제29조(제28조 삭제)

- 별표 1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, 동호의 해당공무원란 4, 동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1 ⇒ 영 별표 1

○ 「공무원여비규정」상의 정부구매카드를 지방자치단체
여비카드로 적용하는 조항 신설(안 제5조제7호)

- 제8조의2 및 제16조 중 “정부구매카드”는 지방자치단체
세출예산집행지침의 “지방자치단체여비카드”로 본다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동 개정 조례안은 2007. 11. 13일자로 「공무원여비규정」이
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령에 의거 인용조문 등을 변
경하는 것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해당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

필리핀 카르모나시와의 자매결연 동의안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 : 2008. 02. 21.
- 제출자 : 거창군수
- 상정 및 의결일자 : 2008. 03. 04(제1차 총무위원회)
- 의안번호 : 제2008 - 8호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동남아시아의 영어권이자 세계적 벼품종개량연구소가 소재해 있는 필리핀 카르모나시와 자매결연을 추진 상호간 교류를 통하여 원어민 활용 용이, 어학연수 등 평생 교육도시로서 위상을 제고하고, 농업발전에 기여함은 물론,
- 자매결연을 통해 양군·시민의 이해와 우의를 증진시키고, 다양한 교류와 협력으로 공동의 번영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그동안 교류 상황
 - 카르모나시장 일행 거창군 방문 : 2007. 6. 16
 - 카르모나시에 실무협의 제안서 송부 : 2007. 6. 20
 - 카르모나시장 실무협의단 초청 : 2007. 6. 26
 - 실무협의단 방문 : 2007. 7. 9 ~ 7. 12
 - 우호교류 협약체결 : 2007. 10. 25

- 거창중앙고등학교와 카르모나시 공립고등학교간 자매결연 : 2007. 12. 14
- 중학생 영어경시대회 성적우수 학생 어학연수(16명) : 2008. 1. 3 ~ 1. 30
- 향후 추진계획
 - 2008. 4~5월경 자매결연 체결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동의안은 거창군과 필리핀 카르모나시와의 양 군·시민의 이해와 우의를 증진시키고, 다양한 교류와 협력으로 공동의 번영과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목적이 있으며
-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하고자 할 때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함에 따라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
- 그동안 추진한 양 군·시간에 교류사항 및 상호협력을 위해서 열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상호협력을 위한 기반 작업은 충분히 조성되었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해당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